



포항대학교산학협력단 산업자문운영지침

규정번호	6-0-003		
제정일자	2012.10.01		
개정일자	2020.09.25		
개정번호	1	페이지	1/6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핵심 기술역량이 취약한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며,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전문가와 산업체를 연계하여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“산업자문”이라 함은 포항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이 산업체,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(이하 “산업체등”이라 한다)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(기술지도, 경영지도, 공동연구 등)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“산업교원”이라 함은 포항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에 일정한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- ③ 산업교원은 “책임산업교원”과 “참여산업교원”으로 구분한다. 책임산업교원은 산업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을 수행함에 있어, 그 역할 상 책임자(혹은 교신자)를 지칭한다. 참여산업교원은 책임산업교원이 아닌 모든 산업교원을 지칭한다.
- ④ “산업자문료”라 함은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포항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에 지급하는(혹은 지원하는) 비용을 말한다.

제3조(산업교원 구성)

- ① 산업교원은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을 시행하는 데 충분한 학식과 경력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교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산업교원은 기술지도 분야, 경영지도 분야, 공동연구 분야 및 컨설팅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.
- ③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직접 신청할 경우,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은 제①항 및 제②항을 고려하여 산업교원을 구성한다. <개정 2020. 3. 16.>
- ④ 포항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이 신청할 경우,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은 해당 교원을 산업교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20. 3. 16.>

제4조(산업자문 방법 등)

- ① 산업체 등이 산업자문을 희망하는 경우, 산업체 등 또는 교원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.<개정 2020. 3. 16.>
 1. 산업체 등이 산업자문을 직접 신청할 경우, <별표 1>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.
 2. 교원이 신청할 경우, <별표 2>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. <개정 2020. 3. 16.>
- ②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은 산업체 등 또는 교원의 신청에 응하여, 제3조 제③항 및 제④항에 따라 산업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 3. 16.>
- ③ 산업교원은 <별표 3>의 산업자문결과보고서를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 3. 16.>
- ④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은 산업자문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, 수정·보완·추가자료 제출 등을 해당 산업교원에게 요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해당 산업교원은 지체없이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. <개정 2020. 3. 16.>

제5조(산업자문료 납부)

- ① 산업체 등은 산업자문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시간당 산업자문료(부가세 별도)는 산업자문 신청 시에 결정하며, 산출근거는 별도로 첨부한다.

	포항대학교산학협력단 산업자문운영지침	규정번호	6-0-003	
		제정일자	2012.10.01	
		개정일자	2020.09.25	
		개정번호	1	페이지

③ 산학협력단은 산업체 등이 납부한 산업자문료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.

제6조(산업자문료 분배 및 지급)

① 산업자문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.

1. 산업체 등이 산업자문을 직접 신청한 경우, 산업교원이 n 명

산학협력단	산업교원	
	책임산업교원 : 1 명	참여산업교원 : $(n-1)$ 명
50%	$\left(\frac{150}{n+2}\right)\%$	$\left(\frac{50}{n+2}\right)\%$

2. 산업교원이 산업자문을 신청한 경우, 산업교원이 n 명

산학협력단	산업교원	
	책임산업교원 : 1 명	참여산업교원 : $(n-1)$ 명
10%	$\left(\frac{270}{n+2}\right)\%$	$\left(\frac{90}{n+2}\right)\%$

② 납부된 산업자문료는 납부된 산업자문료는 자문 관련 정산 자료가 모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한다.<개정 2020. 3. 16., 2020. 9. 25>

제7조(실적평가반영)

① 산업자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교원종합평가의 교원업적량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.<개정 2020. 3. 16.>

② 산업자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교원인사의 승진임용·재임용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.<개정 2020. 3. 16.>

③ 제①항, 제②항과 관련하여, 그 세부사항은 교원종합평가지침서, 교원인사규정, 산학협력중점교원인사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.

부 칙 <제정, 2012. 10. 1.>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2년 10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, 2020. 3. 16.>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0년 4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, 2020. 9. 25.>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0년 10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	포항대학교산학협력단 산업자문운영지침		규정번호	6-0-003	
			제정일자	2012.10.01	
			개정일자	2020.09.25	
			개정번호	1	페이지

<별표 1>

산업자문 신청서					
신청분야	기술지도 / 경영지도 / 공동연구 / 컨설팅				
신청업체	업체명			대표자	
	담당자	연락처:		E-mail:	
	주소				
희망자문기간	... ~ ... (총 시간)			산업자문료	(원)
산업자문 주제					
산업교원 (업체가 희망하는 교원이 있는 경우)	성명	소속/부서	연락처	참여율(100%)	비고
현재의 문제점					
산업자문 희망사항					
성공시 기대효과					
기타제안					

붙임 1. 산업자문료 산출근거

위와 같이 산업자문을 신청합니다.

20

신청기관명 : _____ 대 표 : _____ (인)

포항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귀하

	포항대학교산학협력단 산업자문운영지침		규정번호	6-0-003	
			제정일자	2012.10.01	
			개정일자	2020.09.25	
			개정번호	1	페이지

<별표 2>

산업자문 신청서					
신청분야	기술지도 / 경영지도 / 공동연구 / 컨설팅				
신청업체	업체명			대표자	
	담당자	연락처:		E-mail:	
	주소				
희망자문기간	... ~ ... (총 시간)			산업자문료	(원)
산업자문 주제					
산업교원	성명	소속/부서	연락처	참여율(100%)	비고
현재의 문제점					
산업자문 희망사항					
성공시 기대효과					
기타제안					

붙임 1. 산업자문료 산출근거

위와 같이 산업자문을 신청합니다.

20

포항대학교 _____ 학과 교원명 : _____ (인)

포항대학교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장 귀하

	포항대학교산학협력단 산업자문운영지침	규정번호	6-0-003	
		제정일자	2012.10.01	
		개정일자	2020.09.25	
		개정번호	1	페이지

<별표 3>

산업자문 결과보고서			
지원분야	기술지도 / 경영지도 / 공동연구 / 컨설팅		
신청기관(업체)명			
자문일시(기간)	... ~ ... (총 시간)	산업자문료	(원)
산업자문 주제			
자문 내용 및 결과			
<자문 내용>			
<자문 결과> <div style="font-size: 1.5em; margin-top: 50px;">결과물 사진</div>			
위의 산업자문 결과에 대한 사실을 확인합니다.			
산업체명 : _____ 대표 : _____ (인)			

- 붙임 1. 산업자문료 입금증 사본
 2. 산업자문활동보고서(자유양식)

위와 같이 신청기관(업체)에게 산업자문을 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20 . . .

포항대학교 _____ 학과 교원명 : _____ (인)

포항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귀하

	포항대학교산학협력단 산업자문운영지침		규정번호	6-0-003	
			제정일자	2012.10.01	
	개정일자	2020.09.25			
	개정번호	1	페이지	6/6	

개 정 이 력			
개정 번호	현행 구분	개정 일자 (시행 일자)	주요 내용
0	제정	2012.10.01 (2012.10.01)	핵심 기술역량이 취약한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며,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전문가와 산업체를 연계하여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
1	개정	2020.03.16 (2020.04.01)	-행정처리 절차 간소화 및 관련 부서 명확화 -자문료 분배 및 지급 절차 간소화 -자문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평가 실적반영 삭제
2	개정	2020.09.25 (2020.00.00)	-자문료 지급 시기 합리화
※ 현행 구분 : 제정, 개정, 폐지			